

2026학년도

품격 높은 세계인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2025. 8.



대원외국어고등학교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2026학년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남·여 10학급)

모집 단위	학과 학급 수	독일어과 2	프랑스어과 2	스페인어과 2	일본어과 2	중국어과 2	5과 10학급
정 원 내	사회통합전형(20%)	10	10	10	10	10	50
	일반전형(80%)	40	40	40	40	40	200
	합계	50	50	50	50	50	250
정 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정원의 3%이내					7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정원의 2%이내					5
	외국인전형	학급 수 X 2명					20
	합계						32

-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학과별로 모집하며(학과 복수 지원 금지), 모집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사회통합전형은 모집정원의 20%(50명)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며, 유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학과별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정원에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 학과별 모집 정원에서 학과별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소수점은 버림)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 원서접수 종료 후 즉시 사회통합전형 지원 미달 인원을 반영한 일반전형의 학과별 최종 선발 가능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한 후순위 지원자는 해당 학과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정원을 정함 (총 15명: 독일어과 3명, 프랑스어과 3명, 스페인어과 3명, 일본어과 3명, 중국어과 3명)
-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 ※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전형 1단계에서 8명을 선발함(5명×1.5=7.5명의 소수점 올림)
- ※ '정원 외' 각 전형에서, 합격자는 전원 지방학과에 배정함
- ※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단위별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지 원 자 격
공 통 사 항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학생 거주지 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음 (단, 정원외 외국인전형에만 해당됨) ※ 「추가전형」도 동일함 5)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자 포함)

나. 전형유형 및 세부 지원 자격: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전형	공통사항 지원자격을 갖춘 자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 근거 조항 제60조의5로 입법 개정 예정 [시행 2025. 9. 19.] 6)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재학생’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단계에서는 학생·학부모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여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별도 심의 후 회의록 제출(필수),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증빙서류 없는 경우) 7)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 '교육지원 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전형 "정원 외"로 지원
	사회 통합 전형	1 순 위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6)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7)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8)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2)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3)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4)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5) 사·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학비 면제 대상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각목 및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자격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되어 통보된 자	
	외국인전형	•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교운영위원회 별도 심의 및 회의록 제출 필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 ‘**교육지원 대상자**’일 경우 기회균등전형이 아닌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으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자(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

기회균등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범위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증명서류(=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 각 증명서류의 ‘확인 대상자’가 지원학생 본인 또는 부모이면 지원 가능

예시)

1.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할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4. 할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대상자 사망시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함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제3호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교육지원대상자**’일 경우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으로 지원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필수 요건: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2025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62,782	225,915	229,454	880,320
3인	243,019	288,617	295,134	1,299,840
4인	320,449	354,964	369,517	1,711,680
5인	382,076	407,092	431,294	2,099,760
6인	447,279	461,699	506,004	2,466,960
7인	545,970	552,230	599,810	2,821,680
8인	591,277	599,810	673,463	3,176,400
9인	654,281	673,463	792,926	3,531,120
10인	654,281	673,463	792,926	3,885,600

*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분 류	내 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 제 출해야 함 (※ 주의 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지역+직장) 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5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주의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개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을 의미
※ 단, 직장 및 혼합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제외사항)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로서 자격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이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부 또는 모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주의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 (개념)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지방세 부과된 지역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증명서 각각 발급해야 함
- (사례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례2)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 (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자치구 포함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세무민원부서) 직접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불가

나.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단, 원서접수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 (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6개월간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중간에 휴직한 경우: 중간휴직 이후 일부 고지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월 수와 중간휴직 전 고지된 개월 수를 합하여 6개월 분으로 산정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4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 (혼합 6만2천원)

3. 고입특례대상자

- 정원 외 모집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 일반전형**으로 지원
(단, 성적 증빙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3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2025.12.3.(수)~12.5.(금) ▶ 접수기간 중 24시간 운영 ▶ 단, 12.5.(금)은 13:00까지	홈페이지	○ 전형료 30,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료를 결제해야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됨
출력한 원서 및 서류 접수		2025.12.3.(수)~12.5.(금) ▶ 접수시간: 09:00~17:00 ▶ 단, 12.5.(금)은 09:00~15:00	본교 접수처	○ 서류 제출(자기소개서 미포함) ○ 직접 방문 제출(대리인 가능) ※ 대리접수 시 유의사항: 지원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우편 접수 불가 ○ 단, 12.5.(금) 마감일은 15:00까지
면접대상자 발표		2025.12.8.(월) 15:00	홈페이지	○ 1단계 합격 여부 확인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2025.12.8.(월) 15:00~12.10.(수) 17:00까지	홈페이지	○ 온라인 작성 제출 ○ 작성 기간 중 24시간 운영 ○ 단, 12.10.(수) 마감일은 17:00까지
면접 전형일		2025.12.15.(월)	본교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면접시간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5.12.19.(금) 15:00	홈페이지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6.1.12.(월)~1.13.(화)	본교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면접 전형일	2026.1.15.(목)	본교	
	합격자 발표	2026.1.16.(금)	본교	
합격자 예비소집		추후 공지	본교	
합격자 등록금 납부		2026.1.21.(수)~1.23.(금)	지정금융기관	

※ 학교 생활기록부 출결 산출 기준일은 2025.11.14.(금)(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

※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	접수번호 생성되면 취소 불가
온라인 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전형료 미결제	접수 미완료로 지원자 명단 포함 불가
전형료를 결제하였으나 서류 미제출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
전형료 결제 이후 타 학교장 선발 후기에 지원하여 전형료 결제	이중지원으로 불합격 처리

대 상	제 출 서 류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및 수험표 각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 담임교사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원본 2부(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Ⅱ(상급학교제출용) 출력 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출력 (단,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에 해당) <외고·국제고 입시용으로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사항> ○ 수상경력(3번)은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은 영어, 국어, 사회(사회가 없는 경우 역사)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 ○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8번) 내 중학교 3학년의 내용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꼬리말의 학교명, 반, 번호, 성명 자동 삭제 ○ NEIS 출력물 공통양식(학교명/일시/IP주소/출력자명) 정보 비공개 ※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출결) 산출 기준일 2025.11.14.(금)을 출결 특기사항란에 기재 후 출력 ○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단, ①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외국인전형 지원자는 제외) ○ 자기소개서 - 면접대상자에 한해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기재 금지)

대 상	제 출 서 류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사항>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증시스템으로 검증) ○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재적(정원외 관리, 재학사실 등) 또는 졸업증명서,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 합격증명서(또는 합격증서 사본) 및 성적증명서 - 단, 합격증서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 및 제4호 '정원 내' 고입특례대상자 해당자가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성적증명서 - [붙임5] 고등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 확인서(교육지원청용)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서명 또는 인 필요

대 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사 회 통 합 전 형	사회통합전형 공통	• [붙임1] 202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 • [붙임2]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확인서		[본고 소정양식]
		•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자)' 기준		구청,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확인서 발급사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학교 행정실에 교육비 담당부서 문의 후 수기발급 요청 (※ 학교장 직인 날인 포함)
	기 회 균 등 전 형	• [붙임3] 학교장 추천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포함		[본고 소정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 1부 제출 -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 각 1부(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자치구 포함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 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서울이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구청(세무민원부서), 주민센터(방문발급만 가능)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원본대조필: 해당 중학교 교감날인(출업예정자)]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정부24(홈페이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대 상		제 출 서 류			
사 회 통 합 전 형	사 회 다 양 성 전 형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부·모 모두 제출) ※ 등본상 가족구성원 분리 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건강 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는 경 우에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직장건강 보험료 / 혼합 가입자 (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는 경 우에 제출)	
		다문화가족 자녀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 별 과세증명서(‘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 재된 증명서) 1부 제출 -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 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 각 1부(서울 내 부과되지 않 은 모든 자치구 포함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 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없음 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서울이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구청(세무민원 부서), 주민센터(방문 발급만 가능)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졸업(예정)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사실관계 확인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의 자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순직군경·순직소방관·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자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주택분)를 친부·친모 모두 제출	
		군인 자녀(중령 이하)	· 재직증명서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 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 이하)			

대 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정 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지청
	고입특례대상자전형	[붙임4] 고등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 확인서(중학교용) - 다른 시·도 출신자: 고입특례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본교 소정양식]
	외국인전형	-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지원자 국가 신분증 사본) 1부 (부, 모 포함) - 여권 사본 1부 (부, 모 포함) - 중학교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VISA 발급 후 입학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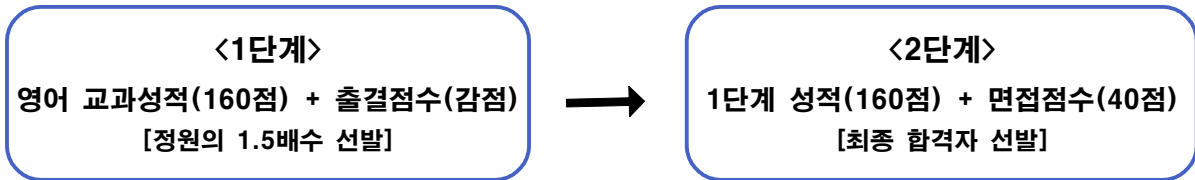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2025.11.3.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제출

※ 지원 자격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전에 지원 자격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 일반전형의 1차 전형 대상 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전형 최종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정원과 사회통합전형에서 이월된 인원의 합으로 함

1) 1단계: '영어 교과성적(160점) +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가) 영어 교과성적 산출 방식

영어 교과성적 = 중학교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성취도별 부여점수의 합

- ※ 영어 교과성적은 중학교 2, 3학년(4개 학기)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를 '성적 산출 기준표'에 의거, 점수화하여 반영 (학기별 40점)
-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를 반영하여 선발함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나) 성적 산출 기준표

성취도	A	B	C	D	E
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 자유학기제가 포함된 학기의 경우, 성적 산출 시 동일 학년의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다) 교과성적 산출 관련 유의사항

(1) 영어 교과성적 산출 유의사항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을 반영하되, 조기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함
- ② 2, 3학년 영어 교과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관리 규정에 따라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함(한 학년의 1,2학기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다른 학년의 동일 학기 성적을 반영함)

(2) 해외 중학교 출신자 교과성적 산출 방법

- ① 최종 4학기 중 한 학기라도 국내 성적이 있으면 국내 성적만 반영함
- ② 국내 중학교 2, 3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는 해외 최종 4학기 영어성적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아래 표에 의해 성취도(A, B, ...)로 점수를 부여함

원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성취도	A	B	C	D	E

- ③ 동점자 발생 시, 국어·사회 교과 대신 영어·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를 반영함.

(※ 사회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역사 관련 교과(History 등)를 반영하며, 역사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를 반영함)

[동점자 처리 기준]

: 3학년 2학기 영어 → 3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3학년 1학기 영어 → 3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2학기 영어 → 2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1학기 영어 → 2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순으로 반영

④ 해외 중학교 출신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신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 (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함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함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함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 성적 산출 방법

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원점수를 아래의 환산표에 의해 성취도를 환산하여 반영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점수 환산 성취도】

원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성취도	A	B	C	D	E

라) 출결점수 산출 방식

$$\text{출결점수} = - (\text{3개 학년 미인정 결석 일수} \times 1\text{점})$$

(1)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결점수 산출 기준: 2025.11.14.(금)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 단,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학년(졸업시점) 기준으로 적용함

(2)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종류를 불문하고 3회 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하여 감점하며, 나머지 2회 이하는 감점하지 아니함

(3) 출결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함

(4) 출결 기록이 없는 자의 출결점수 산출: 3학년 2학기 영어 과목 성취도로 반영

성취도	A	B	C	D	E
출결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2)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로 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방식

$$\text{면접점수(40점)} = \text{자기주도학습(꿈과 끼 영역) (30점)} + \text{인성영역(10점)}$$

(면접을 위한 사전단계인 서류평가도 면접점수에 포함됨)

나. 전형단계 영역별 배점

1단계					2단계	총 점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출결	면 점	
40점	40점	40점	40점	감점	40점	200점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영역 (꿈과 끼 영역) (30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을 포함)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20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10점	
인성영역 (10점)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핵심 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핵심인성요소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함	10점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 외국인의 경우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되,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면접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라.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가)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과 그 과정에서 느낀점
- 나)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2) 인성 영역

- 가)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나)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마.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저장함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 '유사도검증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함

4) 다음과 같은 경우 0점 처리함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교과목의 점수·석차,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 및 수상 실적, 교내·외 인증시험·각종 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 등 기재 시

※ 단, '참여 사실'만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0점 처리

5)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 논문 투고 또는 발표, 도서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 하단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의 11번 항목에 제시된 기재불가사항으로 한정하되, 그 외 사항 감점처리 적용 여부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 6) 평가 항목은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등으로 구분
-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금하며, 면접 전형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없음
- 8)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기술된 하단의 내용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전형 등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에서 제외
- 9)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00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가. 일반전형 · 보훈자자녀전형 ·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외국인전형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선발함

나. 사회통합전형

- 모집 정원의 20%(50명)를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되,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영어 교과성적 점수(출결 감점 포함),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함
- ※ 학과별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정원에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 학과별 모집 정원에서 학과별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소수점은 버림)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2단계 : 기회균등전형지원자 중 1단계 우선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시 기준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를 선발함
- ※ 중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추천받은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학부모 및 지원자 동의 시 동일 학과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될 수 있음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15명)로 하되, 각 과별 최대 모집 정원(3명) 이내로 선발함

학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총원
인원	3명	3명	3명	3명	3명	15명

- 합격 후에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함
- ※ [붙임1] '202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전형 구분	동점자 사정 기준
모든 유형	1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 - '국어 및 사회 교과와 학기별 성취도' 순으로 선발 :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 ⇨ 3학년 2학기 사회 성적 ⇨ 3학년 1학기 국어 성적 ⇨ 3학년 1학기 사회 성적 ⇨ 2학년 2학기 국어 성적 ⇨ 2학년 2학기 사회 성적 ⇨ 2학년 1학기 국어 성적 ⇨ 2학년 1학기 사회 성적순으로 선발함 ※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발 2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 : 2단계 동점자는 면접점수 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항목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항목 점수 ⇨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 ⇨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 ⇨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 ⇨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 ⇨ 출결점수(감점 적은 순)

가. 제출 서류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자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나.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다. 이중지원자**

1) 전기고등학교를 2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합격여부 무관)

※ 과학고(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와 영재학교(서울과학고)는 다음을 유의

(예시1)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특성화고에 지원 불가

(예시2) 예술고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예술고에 지원 불가

(예시3) 예술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관악예술과 정시모집에 지원 불가

2)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3)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4)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불가

5)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 1개교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 불가

6)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합격자(배정대상자)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7) 다른 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8) 다른 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합격(불합격)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단,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제3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제1항)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 한민고등학교(일반고, 군인자녀 전형) 또는 경북 영천고등학교(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지원자는 한민고 또는 영천고와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후기고등학교의 이중지원은 가능하나, 한민고 또는 영천고 합격 시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

가. 교육비 지원 내용 [2025학년도 기준 참고사항]

1) 지원 근거: 「2025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학생맞춤담당지원관-2881, 2025. 2. 27.)

2)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나) 지원기간: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다)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입학 이후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3)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법정저소득자격 보유자(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는 학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 말까지 지원

교육비 지원 관련 유의 사항

1.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6년에 시행되는 「2026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세부 지원사항이 결정됨

※ 아래 지원 사항은 2025학년도 기준이며, 2026학년도 신입생은 상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회균등전형 입학자와 지원방법(금액)이 상이함

나. 학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항목

구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법정 저소득 자격			소득 인정액 기준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지원		
학교운영 지원비	교육청 지원 (연 731,000원 이내)				

※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다.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지원자격		대상 확인	지원 항목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NEIS ⇨ 교육복지 ⇨ 수급자관리 ⇨ 교육복지 수혜 수급자관리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50만원 이내) - 수련활동비 (20만원 이내) - 앨범비 (전액, 고3 졸업예정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단,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일반고와 지원 기준 동일

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진로·진학	■ 진로상담 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 진학지도 담당 교사와 졸업생을 통한 대입 면접 교육 ■ 졸업 동문 및 학부모 초청 진로 특강 ■ 지원 희망 대학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 실시 ■ 주요 대학 입학설명회 실시 및 대학 입학 담당자와 상담 기회 부여
학교 생활 적응	■ 신입생 적응을 위한 품격교육 ■ 담임교사 개별 상담활동 및 특별지도 ■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활동
교과 향상	■ 주요교과 질문 교실 운영 (국어·영어·수학·과학) ■ 졸업생 멘토링을 통한 영어 및 전공어 1:1 개인 지도 ■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활동인 특색 수업 ■ 학생 희망에 따른 선택형 방과후학교 ■ 자율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동아리 활동
비교과 / 인성 교육	■ 1인 1동아리 활동 ■ 학교 축제 공연 및 전시 활동 전원 참가 ■ 전공어별 전통 민속춤 공연 활동 ■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리더십 캠프 ■ 문화 예술 프로그램 관람 지원
장학금 및 교육활동비 지원	■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입학전형료 지원 ■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 위 프로그램은 본교 1학년(2025학년도 신입학) 재학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2026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지원 내용은 해당 본인에게만 공지되며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음

마. 기회균등전형 입학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 1) 지 급 액 : 3년간 총 3,600,000원 지급 (월별 100,000원 지급)
- 2) 지급 대상 : 기회균등전형
- 3) 지급 기준 : 모집학과별 최종 합격자 중 성적 최상위자
- 4) 지급 기한 : 본교 졸업시까지(단, 휴학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시에는 중지)

가. 이중지원 금지

- 전기고 및 후기고 합격자는 지원 불가
(후기고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
-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대상자(합격자)는 본교 추가모집 지원 불가
- 접수일자,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소재 학교장 선발 후기고(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중 1개교만 지원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취소가 불가함(타 학교 지원 시 이중지원임)

※ 이중 지원의 금지는 접수일자,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으며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본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추가 모집 포함)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제출된 서류 및 입학전형료 30,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별도)은 반환하지 않으며, 1단계 불합격자는 20,000원을 원서 작성 시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환불함 (단,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다. 온라인 접수(전형료 결제)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1단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다른 학교 지원 불가)
- 라.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 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성적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중학교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기말고사를 미 실시한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 성취도를 해당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음)
- 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중학교에 재취학한 경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함. 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하는 자료를 활용함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사.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아.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허위 내용 기재,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자.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추가 선발함
- 차.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참고)
- 카.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 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시행 2025.5.15.)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 파.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하. 본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Intelligence·Humanity·Courage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ww.dwfl.hs.kr

우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중곡 4동)

·Telephone: (02) 2204-1514, 1515 ·Fax: (02) 2204-154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본교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출결, 교과성적(국어, 사회, 영어), 증명사진
- 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학생 및 학부모 장애 정보(사회통합 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교육청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조회, 고등학교 이중 지원 확인

(제공 항목) 학생 이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학교명, 합격 학교명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